

의안번호	2219569
의 퇴 인	조은희 의원
회 답 일	2026. 7. 29.
추계번호	26F3164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산정방식 변경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교부금의 종류와 재원)	○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 등의 일정 비율로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- 산정방식: (현행) 내국세(목적세 등 제외) × 20.79% → (개정안)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, 물가 상승률,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※ 단, 교부금 재원 산정액의 하한은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의 95% - 교육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부분의 산정방식은 현행 유지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(교부금의 종류와 재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(이하 ‘교부금’) 재원 중 내국세 등의 일정 비율로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, 교부금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(안 제3조 등)

- 교부금 재원은 현행 내국세 등의 일정 비율로 연동되는 부분과 교육세에서
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및 영유아특별회계로 전입금을 제외한 부분으로 구성

－ 내국세 등의 연동되는 부분의 규모는 내국세에서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45%를 제외한 금액의 20.79%

－ 교육세에서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및 영유아특별회계 전입금액을 제외한 부분의 규모는 교육세 총액에서 교육세 금융보험업자분을 제외한 금액의 40%

※ 교육세 금융보험업자분은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며, 교육세에서 금융보험업자분을 제외한 금액의 60%는 영유아특별회계로 전입

○ 개정안은 교부금의 재원 중 내국세 등의 일정 비율로 연동되는 부분에 대한 재원 산정방식을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교부금의 증감이 예상됨

－ 산정방식: (현행) [내국세 - (개별소비세 담배분 $\times$ 45%)] $\times$ 20.79% $\rightarrow$ (개정안)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, 물가상승률,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

※ 단, 교부금 산정액이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의 95% 미만인 경우,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의 95%를 재원으로 함

－ 교육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부분의 산정방식은 현행 유지

[표 1] 현행 및 개정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구성

조항 ¹⁾	현행	개정안
제1호	[내국세 - (개별소비세 담배분 $\times$ 45%)] $\times$ 20.79%	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, 물가상승률,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
제2호	(교육세액 - 교육세 금융보험업자분) $\times$ 40% ²⁾	(좌 동)

주: 1)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3조제2항제1호와 제2호를 의미

2) 교육세 금융보험업자분은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며, (교육세액 - 교육세 금융보험업자분)의 60%는 영유아특별회계로 전입

－ 개정안으로 산정된 교부금 재원은 향후 경제성장률, 물가상승률, 학령인구 증감률 전망치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현행 교부금 재원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음

□ 개정안에 따른 교부금 재원의 증감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개정안의 교부금 재원을 각각 추정하여 비교하여야 하나, 개정안의 산정방식 규정의 미비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- 개정안의 교부금 규모는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의 전망치를 산정방식에 반영하여 추정하여야 하나, 개정안의 산정방식 규정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 - 경제성장률 등의 전망치를 반영할 산정방식 등의 규정이 시행령 위임사항으로 미비하여 개정안에 따른 교부금 규모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참고로, 2027~2029년간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경제성장률인 명목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 전망치는 다음과 같음
 - ※ 명목경제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(2025.9.), 학령인구 증감률은 국가데이터처 전망치(2023.12.)임

[표 2] 명목경제성장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 전망치: 2027~2029년

(단위: %)

전망치 구분	2027	2028	2029
명목경제성장률	3.9	3.7	3.5
학령인구 증감률(6~17세)	△3.6	△3.9	△5.1

자료: (명목경제성장률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6년 NABO 경제전망: 2025~2029」, 2025.9.
(학령인구 증감률) 국가데이터처, 「장래인구추계」, 2023.12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